

장위13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

장위13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9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(또는 조합원) 및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5일
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
1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 [2026. 3. 5.(목)~2026. 3. 19.(목)]
2. 공람장소
 - 가.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(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, 8층)
 - 나. 장위13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(서울 성북구 화랑로 248, 904호)
3. 공람내용 :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
4. 의견제출 :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
5.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
 - 가. 사업명칭 : 장위13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
 - 나. 사업면적 : 9,786.00㎡
 - 다. 시 행 자 : 장위13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 - 라. 변경내용 : 조합임원 선임 및 보궐선임, 조합정관과 조합원 명의 변경
6. 문의 :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 (☎02-2241-2914)

공 램 의 견 서

공 고 명	장위13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			
공람기간	2026. 3. 5.(목) ~ 2026. 3. 19.(목) [14일간]			
의 견 제 출 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(연락처: - -)		
	유 형	☐ 토지등소유자(또는 조합원) ☐ 이해관계인 ☐ 주민		

의 견 내 용

본인은 장위13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과 관련하여,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3월 일

제 출 인 (서명 또는 인)

성북구청장 귀하